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4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김교홍의원안)	3

I. 개요

1.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24.
- (3) 회 부 일 : 2025. 6.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김교홍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63조의4 신설) ○ 공제대상: 내국인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 제외)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연도 투자비용에 대해 매년 각각 공제 ○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제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분부터 적용

* 김교홍의원안 2025. 6. 24. 발의(의안번호 11041)

□ 개정안은 내국인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3%(대기업), 7%(중견기업), 12%(중소기업)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1)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채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5년 9월 현재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북도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23년 5월 울산 동구 등 기존 지역 지정만료 이후 신규 지정된 지역은 없음.²⁾

[산업위기지역 지정 현황]

구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	전남 여수 (’25. 5. 1. ~ ’27. 4. 30.) 충남 서산 (’25. 8. 28. ~ ’27. 8. 27.) 경북 포항 (’25. 8. 28. ~ ’27. 8. 27.)	-
지정기간	2년	2년(최대 5년) *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기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은 ’23. 5. 28 자로 만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25년 5월 1일~2027년 4월 30일(2년)

□ 개정안은 내국인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 제와 같이 투자금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 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개정안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비교]

(단위: %)

제도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통합투자 세액공제 (현행)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개정안)	구분없음	3	7	12	-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첫째, 지역의 주된 산업의 악화 또는 소멸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규투자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고용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함.

둘째, 산업위기지역은 주로 수도권 외 지방을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 55.4%(사업체 수 기준), 64.7%(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3년 총 2,648개 상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1,073개로 전체의 약 41%,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73%의 상장사가 집중되어 있음.³⁾

또한, 2023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82곳 가운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50곳, 수도권 전체로는 58곳이 위치하는 등⁴⁾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지원 배제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의 배제는 조세특례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과도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

3) 통계청, 'KOSIS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KIND 기업공시채널.

4)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5) 중복지원의 배제는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제도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임.

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현행법상 동일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간 중복적용 배제⁶⁾, 동일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⁷⁾, 동일사업장 내 세액감면간 중복적용 배제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간 중복적용 배제 등이 규정되어 있음.

한편,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할 경우 동일한 투자에 대하여 복수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짐.

동일한 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조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투자대상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대하는 것은 기업 등의 소재 지역이 아닌 기술 분야별 중요도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셋째, 현행 법령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7)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19조제1항)와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 공제(제29조의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6조), 지방이전기업 세액 감면(제63조), 각종 특구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제12조의2 등)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소득 발생 이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후 2년 동안은 50%의 세액을 감면하는 혜택을 적용 중임.⁹⁾

또한, 2025년 9월 3일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¹⁰⁾에 따라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 일부에 대하여 4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년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익금산입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9)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 총액 및 내용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3.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
4.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11. (생략)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해소,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투자 유치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¹¹⁾ 역시 활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위기지역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넷째, 산업위기지역은 지정·선포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11)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 발생 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간 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함.